

제3장 판단사례

사례 1: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하고 있는 사례

【발명의 명칭】

불단(佛壇)과 동일한 크기의 판넬을 이용한 불단 판매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불단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종래에는 불단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방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에 알맞는 크기의 불단을 선택하여야 했다. 그러나 방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의 불단을 방에 놓고 보지 않는 한, 방의 크기에 알맞는 크기의 불단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선택했던 불단을 반품하고 여러 번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원 발명은 이러한 시행착오 없이 고객이 자신의 방 크기에 적합한 불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불단 판매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실제 불단과 동일한 크기의 불단그림이 담긴 여러 장의 칼라인쇄 판넬이 고객의 집으로 운반된다. 판넬들은 불단이 설치될 고객의 방에 진열되고 고객은 적절한 판넬을 선택한다. 고객이 불단을 선택하면 전화로 배달을 의뢰하고 나중에 실제 불단을 직접 집으로 배달한다.

〈명세서 기재 해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영업방법의 기재만 있을 뿐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기재나 암시도 없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불단과 동일한 크기이고 불단의 정면을 그린 여러 장의 칼라 판넬(panel) 불단(佛壇)을 만들어 이것을 고객에 보여 주고 원하는 불단을 선택하면 실물의 불단을 후에 직접 고객의 집으로 배달하여 판매하는 방법.

(해설)

청구항 1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지 않고 인간의 행위만으로 수행되어지는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사례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정에 대한 판단 사례

【발명의 명칭】

조달명세표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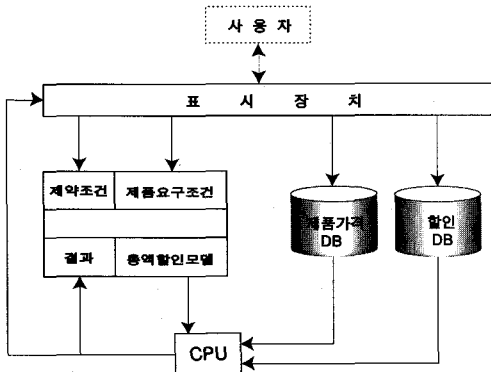
〈요약〉

본 발명은 물품구매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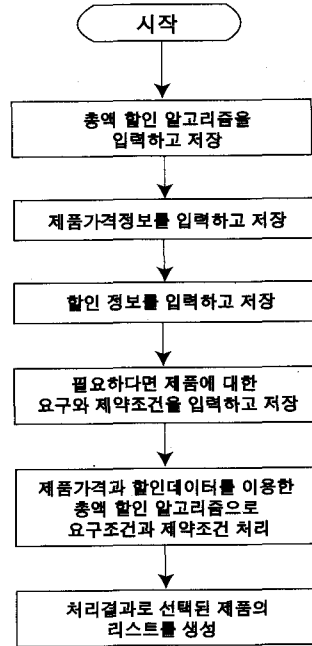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과거에는 물품의 구매시 개개의 물품에 대해 구매 결정을 하였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한 물품에 대해서 많은 양을 구매하는 경우 가격을 깎아주는 가격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물품을 함께 구매할 때도 그 총량에 따라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총량 할인모델에 맞는 최적의 해를 구하고 그에 따라 조달 명세표를 생성하여 구매관리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1) 본 발명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



(그림 2) 최적해를 결정하기 위한 플로우차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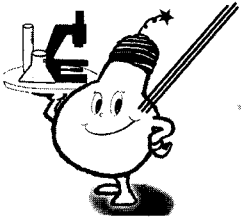
〈요약〉

구매자가 입력 스크린 포맷에 맞추어 제품생산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제품가격과 할인 정보, 제품수요와 기타 제약조건들을 입력한다. 이 정보들이 입력되면 총액할인 알고리즘이 가동되어 제품가격 데이터, 할인가격 데이터, 기타 제약조건들을 모두 고려한 최적 구매전략을 계산해낸다. 결정된 구매전략에 따라서 선택된 제품들의 리스트가 구매자에게 표시된다.

〈명세서 기재 해설〉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구매자가 거기에 맞추어 입력하여야 하는 입력스크린 포맷의 예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이 구현되는 컴퓨터시스템의 세부구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선형 프로그램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서 그 구체적인 실시 예를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총액할인제도하에서 구매자가 제품구매요구를 생성시키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상에서 구현되는 최적화 방법으로, 컴퓨터시스템의 제품가격 데이터베이스에 생산자들이 제시한 각 제품들의 가격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저장하는 단계;

컴퓨터시스템의 할인 데이터베이스에 각 생산자들이 제시한 제품들의 할인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

구매자가 필요한 제품들의 집합을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

상기 제품가격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할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총액 결정구매모델을 묘사하는 수학적 관계를 포함하며,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고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특정 수학적 알고리즘을 상기 필요한 제품들의 집합에 적용시켜 수행되게 하는 단계로;

구성된 최적화 방법.

(청구항 2)

총액할인제도 하에서 구매자가 제품구매요구를 생성시키기 위한 컴퓨터시스템상에서 구현되는 방법으로, 컴퓨터시스템의 제품가격 데이터베이스에 생산자들이 제시한 각 제품들의 가격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저장하는 단계;

컴퓨터시스템의 할인 데이터베이스에 각 생산자들이 제시한 제품들의 할인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

구매자가 필요한 제품들의 집합을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

상기 제품가격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할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총액 결정구매모델을 묘사하는 수학적 관계를 포함하며,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고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특정 수학적 알고리즘을 상기 필요한 제품들의 집합에 적용시켜 수행되게 하는 단계;

상기 수학적 알고리즘의 적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서 선택된 제품들과 가격들을 생산자들과 함께 리스트로 작성하여 이를 컴퓨터 상에 표시하는 단계로; 구성된 제품구매요구 생성 방법.

(해설)

청구항 1은 청구범위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수학적 알고리즘을 청구하고 있다. 물론 최적화 계산 방법이 제품구매요구라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이 전제부에 암시되어 있으나 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으로서 그 수단이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산업상이용가능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 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청구항 2는 계산결과에 따라 작성한 리스트를 컴퓨터 상에 표시함으로써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기재하고 있으며, 이 기재는 구매자에게 계산결과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구매자가 제품구매요구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이 기재에 의해 청구항 2는 단순한수학적 알고리즘이 아니라 산업상 이용가능한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 2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된다.

사례 3: 추상적 아이디어 및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의 판단사례

【발명의 명칭】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일반 고객이 구입을 희망하는 상품관련 정보와 고객이 희망하는 정보의 입수를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보유통을 중계하는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본 발명은 기업이 비싼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이 희망하는 정보를 확실하게 입수할 수 있게 하는 중계시스템을 제공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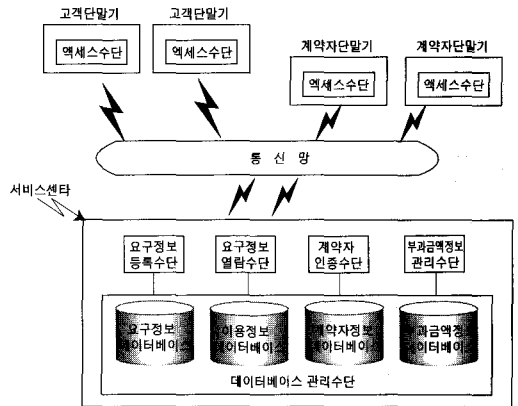
〈요약〉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은 일반고객의 단말기와 열람계약자의 단말기 사이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다. 불특정 다수인 상기 일반고객의 단말기로부터 특정 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한다. 열람계약자의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계약자의 인증을 행한 후에 열람계약자가 인증된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의 검색화면을 열람계약자의 단말기에 송신하여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시킨다.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한 열람계약자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요구정보 등록수단은 인터넷의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하고, 불특정다수인 고객단말기로부터의 요구정보를 요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계약자 인증수단은 미리 계약한 회원으로부터의 열람요구에 의하여, 열람계약자ID 등에 의해 계약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열람요구자의 인증을 행한다.

그 후 요구정보열람수단은 요구정보를 토대로 요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요구정보를 계약자 단말기에 송신하고 이용상황을 이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또한 부과요금정보 관리수단은 이용정보에 대응하는 부과요금정보를 부과요금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그림 3) 본 발명의 시스템 구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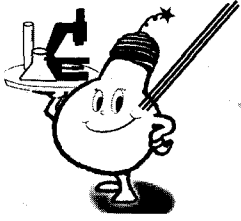
〈명세서 기재 해설〉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각 구성요소와 그 연결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가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구조와 데이터 관리 방법이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 고객이 구입을 희망하는 상품관련 정보와 고객이 희망하는 정보의 입수를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보유통을 중계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일반고객의 단말기와 열람계약자의 단말기 사이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상기 일반고객의 단말기로부터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수집하는 수단;

상기 열람계약자의 단말기로부터 정보제공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계약자의 인증을 행하는 수단;

열람계약자가 인증된 경우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의 검색화면을 상기 열람계약자의 단말기에 송신하고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시키는 수단;

상기 특정 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한 열람계약자에 대한 요금부과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

(청구항 3)

일반고객의 단말기와 열람계약자의 단말기 사이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상기 일반고객의 단말기로부터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과,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하는 수단;

상기 열람계약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계약자의 인증을 행하는 수단;

열람계약자가 인증된 경우에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의 검색화면을 상기 열람계약자의 단말기에 송신하고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시키는 수단;

상기 특정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한 열람계약자에 대한 요금부과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객정보등록 중계시스템.

(해설)

청구항 1은 고객과 기업사이의 정보유통을 증대하는 시스템을 청구하고있으나 정보유통이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한정도 없다. 비록 상세한 설명에는 구체적인 구현기술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항 1은 상세한 설명의 구체적인 기술 수단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유통시스템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 상태로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구체적 수단을 청구하고 있지 않아서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청구항 2는 일반고객이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 열람계약자가 볼 수 있도록 이를 증대해 주는 중계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청구하면서 필수구성요소인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하는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청구항 3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사례 4: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발명의 명칭]

전자쿠폰 배포 및 회수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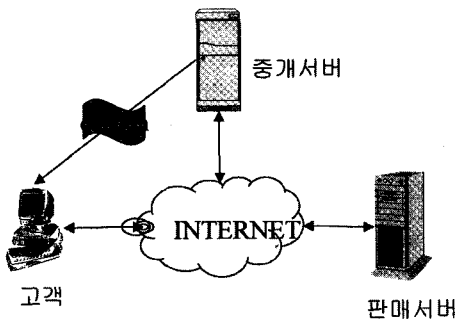
본 발명은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적으로 쿠폰을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기존에는 사용자가 개개의 쿠폰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쿠폰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프린트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에 따른 시간소모와 불편함이 컸다. 본 발명은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적으로 쿠폰을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림 4) 본 발명의 시스템 구성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고객은 통신채널에 의해 중개서버와 연결된다. 고객이 연결되면 중개서버에서 고객으로 전자쿠폰이 전달된다. 전자쿠폰을 가진 고객은 통신채널을 통해 판매서버에 연결되어 판매서버에 정보를 요청한다. 판매서버는 고객의 전자쿠폰을 인식하여 전자쿠폰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고 거래를 시작한다.

〈명세서 기재 해설〉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서 고객, 중개서버 및 판매서버의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네트워크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자쿠폰의 데이터 구조가 실시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전자쿠폰의 배포 및회수 방법이 플로우차트에 의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쿠폰 배포 및 회수 방법에 있어서,
중개서버와 고객을 통신채널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상기 중개서버에서 고객으로 전자쿠폰을 전달하는 단계;

상기 고객과 판매서버를 통신채널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상기 고객이 상기 판매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판매서버가 상기 전자쿠폰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판매서버와 고객 사이의 거래를 시작하는 기능으로서 상기 전자쿠폰을 상기 판매서버가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쿠폰 배포 및 회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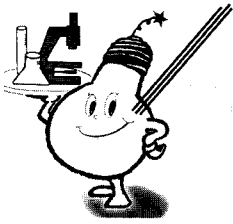
(청구항 2)

전자쿠폰 배포 및 회수 방법에 있어서,
중개서버와 고객을 통신채널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상기 중개서버에서 고객으로 전자쿠폰을 전달하는 단계;

상기 고객과 판매서버를 통신채널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상기 고객이 상기 판매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판매서버가 상기 전자쿠폰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판매서버와 인증서버를 통신채널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상기 인증서버가 상기 전자쿠폰을 인증해주는 단계;
상기 판매서버와 고객 사이의 거래를 시작하는 기능으로서 상기 전자쿠폰을 상기 판매서버가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쿠폰 배포 및 회수 방법

(해설)

청구항 1은 전자쿠폰의 배포 및 회수방법을 청구하고 있는 바 발명의 특징적인 요소기술인 각 단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청구항 2는 전자쿠폰의 배포 및 회수 방법을 청구하면서 발명의 특징적인 요소기술로서 발행된 전자쿠폰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단계를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상세한 설명에서는 시스템구성에 인증서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과 전자쿠폰의 인증과 관련된 데이터구조 및 인증절차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따라서 청구항 2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사례 5: 상세한 설명에서 구현기술이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명의 명칭】

인터넷에서의 효율적인 광고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상에서 특정의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여 광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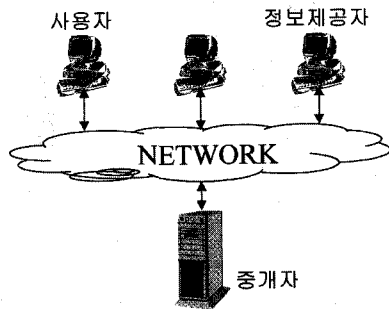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인터넷상에서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사용자가 광고를 보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과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아이콘 등을 숨겨두고 이를 찾아내면 일정한 보상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여전히 광고를 불특정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 발명의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하는데 있어 광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특정의 사용자를 타겟으로 광고를 함으로서 효율적인 광고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5) 본 발명의 시스템 구성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정보제공자, 중개자 및 사용자 컴퓨터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중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등록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흥미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정보제공자는 광고를 중개자 컴퓨터에 제공한다. 중개자 컴퓨터는 광고의 특징과 사용자가 회원등록 단계에서 입력한 흥미정보를 비교하여 그 결과 일치점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를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판단하여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한 보상을 한다.

〈명세서 기재 해설〉

정보제공자, 중개자 및 사용자 컴퓨터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가 중개자 컴퓨터에 접속해 회원등록을 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특정의 광고가 정보제공자 컴퓨터로부터 중개자 컴퓨터에 도착하면 상기 광고가 사용자의 흥미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정의 광고가 사용자의 흥미와 일치하는 경우 그 광고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표시되는 절차와 수단이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해서 설명되어 있다. 사용자가 표시된 광고에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및 사용자가 광고를 보는 대가에 대한 보상 절차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청구항 1)**

인터넷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를 정보제공자로부터 중개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광고의 특징과 사용자가 회원등록 단계에서 입력한 흥미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결과 일치점이 있는 경우 상기 광고를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사용자 컴퓨터와 상기 광고간의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가 정당한 경우 일정한 보상을 하는 단계들;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서의 광고방법

(해설)

청구항 1은 광고의 특징과 사용자가 회원등록 단계에서 입력한 흥미정보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의 광고가 특정사용자에게 전달되게 하려는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광

고가 특정사용자의 흥미와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해결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항 1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려면 명세서에서 특정의 광고가 특정사용자의 흥미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수단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상세한 설명에는 단지 광고의 내용과 사용자가 입력한 흥미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와 수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다.

즉, 특정의 광고가 특정의 사용자 흥미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교 알고리즘” 등에 대한 어떠한 예시나 언급도 없으며, 출원 당시 상기 비교 알고리즘 등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었다. 따라서 본원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구성을 실시가능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발특2000·10

